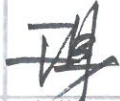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세

한국세무사회	결재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접수일시 2020-02-18	지시사항	
접수청 7272		
주무과		
담당자		

수신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2천만 원)가 신설됨에 따라, 월급여 3천만 원 초과자의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 존		개 정	
월급여 구분	세액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28백만원 ~ 30백만원	(좌 동)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24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98%*42%)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

3. 이에 따라 2020. 2. 11.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시스템에 게재 하였으니, 원천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회원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끝.